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2007. 11

손원익 · 김정아 · 송은주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기부금 지출 현황	9
1. 미국의 기부금 현황	9
2. 영국의 기부금 현황	12
가. 기부금 현황	12
나. 기부금 관련 사회경제 요인	14
III. 주요국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16
1. 대한민국	16
가. 기부금 관련 세제	16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19
2. 미 국	20
가. 기부금 관련 세제	20
나. 조세지원 대상 단체	28
3. 영 국	32
가. 기부금 관련 세제	32
나. 조세지원 대상 단체(Charities)	39
4. 일 본	40
가. 기부금 관련 세제	40
나. 조세지원 대상 단체	42
5. 프랑스	50
6. 독 일	52
7. 대 만	54

IV. 주요국의 기부금세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56
1.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 비교.....	56
2. 정책적 시사점.....	57
참고문헌.....	60

표목차

〈표 Ⅱ-1〉 비영리분야의 규모와 재정(1994~2004년도).....	9
〈표 Ⅲ-1〉 한국의 기부금 세제 개요.....	17
〈표 Ⅲ-2〉 미국의 기부금 세제 개요.....	20
〈표 Ⅲ-3〉 영국의 기부금 세제 개요.....	39
〈표 Ⅲ-4〉 일본의 기부금세제 개요.....	41
〈표 Ⅲ-5〉 프랑스의 기부금세제 개요.....	52
〈표 Ⅲ-6〉 독일의 기부금세제 개요.....	53
〈표 Ⅲ-7〉 대만의 기부금세제 개요.....	55
〈표 Ⅳ-1〉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56
〈표 Ⅳ-2〉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57

그림목차

[그림 1] 미국의 기부금 규모(1966~2006).....	10
[그림 2] 미국의 기부자별 기부금액(1967~2006).....	10
[그림 3] 미국의 분야별 기부금액 비율(1967~2006).....	11
[그림 4] 월평균 기부금 규모별 기부자와 수혜자 비율	12
[그림 5] 기부분야별 기부자와 기부자금액 비율.....	13
[그림 6] 연령별 1인당 평균 월기부액.....	13
[그림 7] 기부방식에 따른 기부자의 평균기부금액	14

I. 서론

- 우리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만으로 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최근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의 급속한 증대는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사회복지 수요가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주요국의 정책방향이 최근에 와서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이 개인의 사회보장부담을 줄이고 그 대신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여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는 다르게 그동안 사회적 수요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부각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이들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들 수 있음
 -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 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법인의 기부보다는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 왔음

-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온 결과 2000년에 개인의 기부총액이 법인의 기부총액을 초과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개인 기부의 80% 정도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에 국한되고 있어 기부가 비영리분야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의 기부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부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국제간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기부금 지출 현황

1. 미국의 기부금 현황

- 미국의 비영리분야 조직들과 이에 대한 조세제도는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계속 발전중임
 - 비영리단체 조직의 수, 자산규모, 기부금, 비용규모,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그 규모가 크게 성장
 -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의 수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약 27% 증가

〈표 II-1〉 비영리분야의 규모와 재정(1994~2004년도)

(단위: 개,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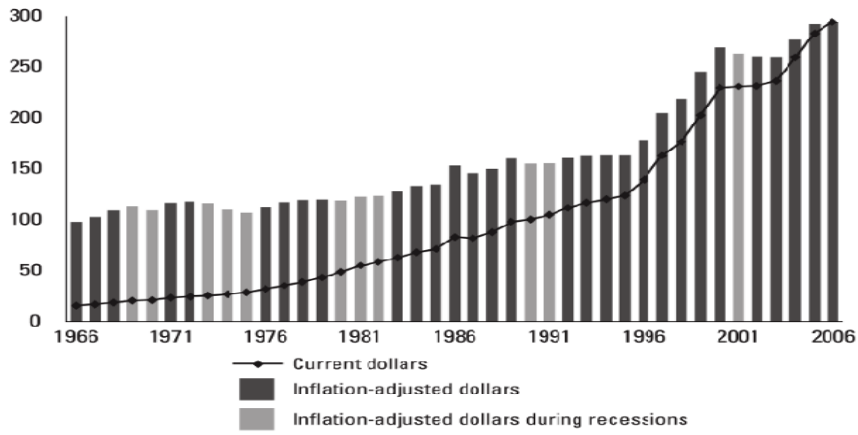
	1994	1999	2004	증가율 1994~2004	증가율 1994~2004 (물가상승률 조정)
총 비영리단체 수	110만	120만	140만	27.0	n.a.
등록된 비영리단체	388,621	398,405	486,982	25.3	n.a.
수입	6,780	9,500	13,610	101.0	61.5
지출	6,210	8,510	12,550	102.0	62.6
자산	12.52	20.52	29.67	137.0	90.7

자료: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Facts and Figures from the Nonprofit Almanac 2007.

- 2006년의 기부금 총액은 2,950억달러. 기부금 규모는 1966년 이후 2,792억달러 증가하였으며, 기부금 규모 성장의 50% 이상은 1996년도 이후 발생
 - 기부금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증권시장의 전성기였던 1990년대 후반에 특히 크게 성장하였음

[그림 1] 미국의 기부금 규모(1966~2006)

(단위: 1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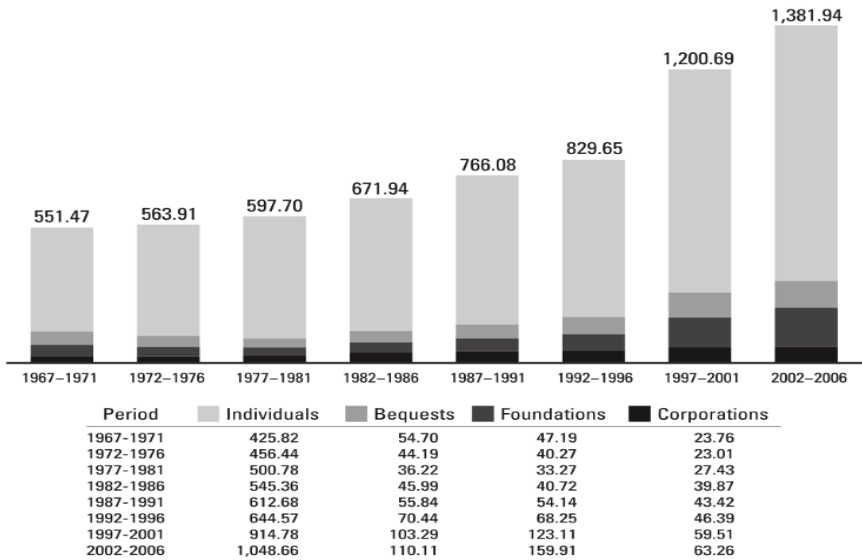


자료: Giving USA 2007

□ 2006년기준 기부자별 기부금액

- 개인 2,229억달러(75.6%), 재단 365억달러(12.4%), 유증 229억달러(7.8%), 법인(주식회사) 127억달러(4.3%)

[그림 2] 미국의 기부자별 기부금액(1967~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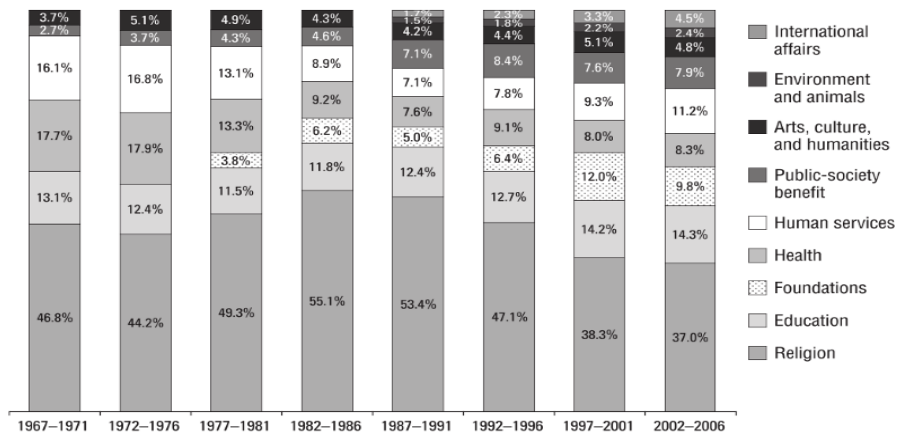
자료: Giving USA 2007

- 개인 기부는 50년 동안 미국 기부자 중 가장 중요한 기부자로 독보적인 의미를 가짐
 - 1967~1971년 개인기부금액 4,258억달러와 비교하여, 2002~2006년 개인기부금액은 10,490억달러로서 146.3% 증가(인플레이션 조정시가 기준)

- 2006년 기준 기부받은 분야별 기부금액
 - 종교 968억달러(32.8%), 교육 410억달러(13.9%), Human service 296억달러(10.0%), 보건 202억달러(6.9%), 공공사회복지 214억달러(7.3%), 예술·문화·인문 125억달러(4.2%), 국제 113억달러(3.8%), 환경과 동물보호 66억달러(2.2%), 재단 295억달러(10.0%), 기타 260억달러(8.8%)

- 종교에서 기부받는 금액이 전통적으로 미국 분야별 기부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3] 미국의 분야별 기부금액 비율(1967~2006)



자료: Giving USA 2007

- 2003년 미국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기부금 소득공제로 인한 총 수입손실은 406억달러로, 근로자의 의료보험과 의료비에 대한 조세지출(1,085억달러)을 제외하고는 가장 규모가 큰 조세지출 항목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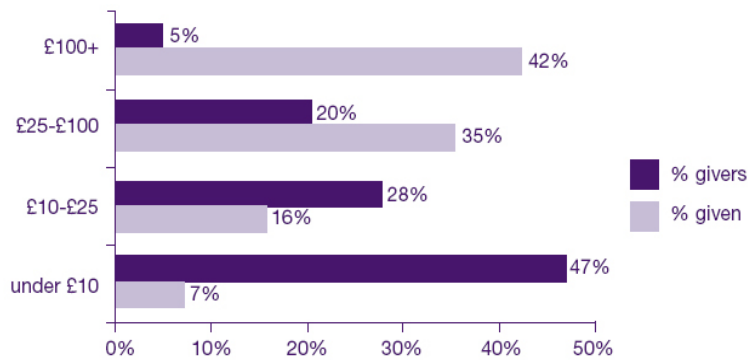
1) Tax expenditures Chapter From President's Fiscal 2004 budget

2. 영국의 기부금 현황

가. 기부금 현황

- 기부자들의 월평균 기부금액은 1페니부터 천파운드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그러나 월평균 기부되는 금액의 3/4 이상은 기부자 1/4(25파운드 이상 기부자들)에 의하여 기부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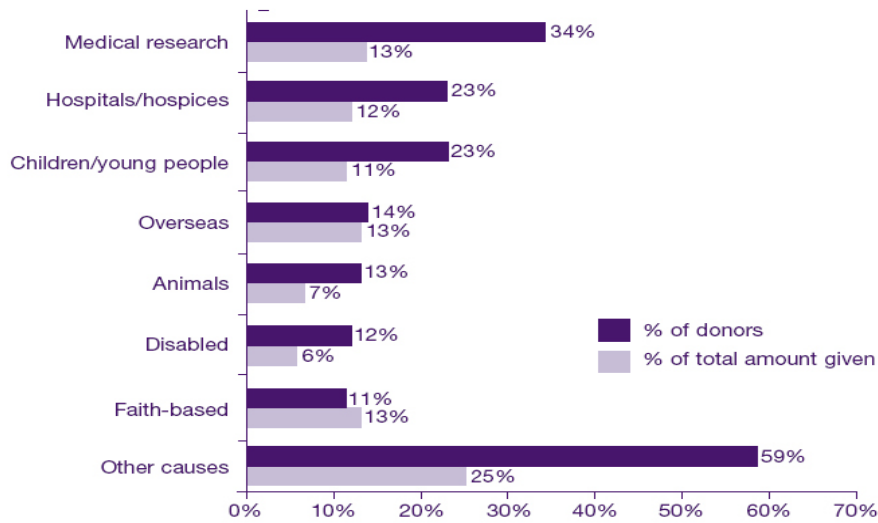
[그림 4] 월평균 기부금 규모별 기부자와 수혜자 비율



자료: UK Giving 2004/05

- 기부분야별 기부자와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부분은 의학연구 분야로, 1/3 이상의 기부자와 기부금액의 13%임
- 의학연구를 다른 건강 관련 분야(병원, 요양원 등과 각종 치료센터 등)와 같이 묶어 살펴보면, 건강 관련 분야가 총 기부금액의 1/4 이상을 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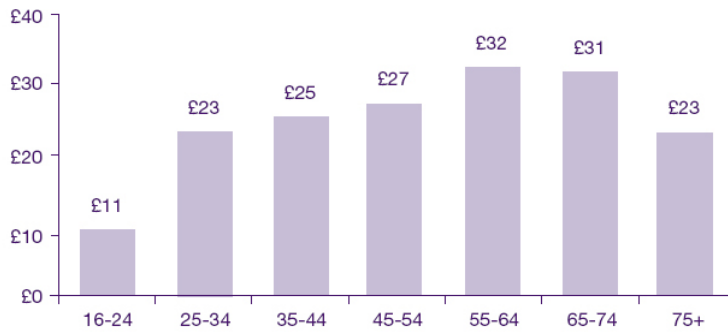
[그림 5] 기부분야별 기부자와 기부자금액 비율



자료: UK Giving 2004/05

- 월기부액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5세에서 64세로 1인당 31.68파운드, 가장 적게 기부하는 연령대는 16세에서 25세로 1인당 월기부액이 11.32파운드임

[그림 6] 연령별 1인당 평균 월기부액



자료: UK Giving 2004/05

- 가장 많은 기부금액이 모인 방식은 신용카드와 개인수표 지불방식으로 분석됨
 - 한편 3% 정도의 기부자들만이 회비 등(Fees)의 방식으로 기부하고 있으나, 상대

적으로 기부금액이 높아 평균 1인당 기부금액은 27.84파운드이고, 총기부금액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그림 7] 기부방식에 따른 기부자의 평균기부금액



자료: UK Giving 2004/05

나. 기부금 관련 사회경제 요인

-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영국의 개인 기부자의 수가 감소
 - Institute of Fiscal Studies(IFS)²⁾에 따르면, 기부자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기부금액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하여 총 기부금액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됨
- 이에 대한 사회경제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³⁾되고 있음
 - 부의 재분배 현상
 - 1990년 중반까지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확연히 커지게 됨
 - 소위 'Super-Rich'라는 계층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상류층의 새로운 세대로 등장

2) UK Giving 2004/05, CAF

3) UK Giving 2004/05, CAF

- 평균 기부금액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은 특정 그룹의 기부자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반면 기부에 대한 참여도 감소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사람들의 수입이 더욱 감소했기 때문
- 소가족과 독신자들의 가구 수 증가
 -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수가 많아졌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도 적어진 것으로 보임
- 인구의 변화도 기부에 많은 영향을 준 요인
 - 1990년 이후 몇십년 동안 16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층이 3%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가 3% 증가
 - 젊은 층보다 나이든 연령층이 좀 더 많이 기부하게 되었고, 나이든 연령층의 기부 증가는 기부금액의 규모가 커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짐

Ⅲ. 주요국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1. 대한민국

가. 기부금 관련 세제

- 우리나라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정하고 있음
- 또한 동일한 기부금이라도 기부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조세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음

1) 법정기부금

-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75%를 한도로 소득공제함 (법인세법 24②)
- 2005년까지는 공제한도가 100%였으나 2006~2008년 기간은 75%, 2009년부터 50%로 점차 축소됨
 - 2005년 세법개정 이전까지 법정기부금에 대해 100% 손금산입을 허용하였으나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손금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
-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정기부금을 적용 받는 대상도 법인보다 광범위함

2) 특례기부금

- 특례기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으로서 법정기부금 공제 후 개인 및 법인 소득의 5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임
 -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있음
 - 우리나라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개인에 한해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함

3)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소득의 5%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고 개인은 소득의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는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및 의료법인 등이 있음

〈표 Ⅲ-1〉 한국의 기부금 세제 개요

종 류	법인 (손금한도)	개인 (비용한도)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법정기부금 (50%, '06~08 75%, '09 이후 50%)	법정기부금 (100%)
- 사립학교병원·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대한적십자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진흥기금	특례기부금 (50%)	
-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기부금 (5%)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해당없음	

〈표 III-1〉의 계속

종 류	법인 (손금한도)	개인 (비용한도)
- 소득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 인정하는 단체: 사내근로 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특례기부금 (50%)	특례기부금 (50%/30%)
- 개인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비용 인정: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해당없음	
- 지정기부금 단체: 학교·기능대학,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2007.3.말 현재 1,123개), 비영리민간단체(개인만 적용, 2007.3.말 현재 42개) -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기부금 (5%)	지정기부금 (10%)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해당없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의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법인세법 제29조)
 - 이자소득금액 등의 100%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 다음의 법인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 학교법인·산학협력단·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나. 조세지원 대상단체

- 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비용공제제도는 각 기부금 유형별로 적용대상 단체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
- 법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에 대해 75% 소득공제, 개인에 대해 100% 비용으로 인정되는 등 조세지원 내용도 차이가 있고 대상단체도 일부 차이가 있음
 - 법인의 경우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문화예술진흥기금을 대상단체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보다 법정기부금의 적용 범위가 넓어, 법인의 법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하여 다음의 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됨
 - 사립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서울대병원·대한적십자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 지정기부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체 및 기부금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의료법인,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일친선협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2007년 3월 말 현재 1,123개 단체
-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만 적용되는 비영리민간단체
- 사립학교 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2. 미 국

가. 기부금 관련 세제

- 미국에서의 기부에 관한 소득공제규정은 소득세(Income tax), 유산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에서 다루고 있음

〈표 III-2〉 미국의 기부금 세제 개요

기부주체	기부받는 단체	소득공제 제한
개인	Public Char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Limit(원칙)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자본이득의 경우 30% Limit(예외)
	Private Foundation 중 operating Foundation ¹⁾	
법인	Non operating Foundation 중 특정요건 충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Limit(원칙)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자본이득의 경우 20% Limit(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170(c)의 단체 • 자선단체를 위한 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받는 단체별로 소득공제 제한규정의 구분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10%의 소득공제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주: 1)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란, 다른 자선단체들에게 모금 등을 통하여 재정지원 등의 소극적 활동만이 아니라 직접 자선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들을 의미(IRC §170(e)(1)(B)(i))

- 그 중 소득세법이 기부에 대한 조세의 기본원칙이 됨
- 소득공제 금액은 기부주체, 기부받는 단체, 기부내용 등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 규정에 따라 달라짐

□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일반 원칙

-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50%, 30%, 20%로 나뉘어짐
- 소득공제 한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두 가지인데 기부하는 자산의 성질(현금 혹은 현물자산)과, 자선단체에 대한 연방세법상 분류임
-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총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는 50%를 넘어서는 안됨
- 부부가 소득공제를 합쳐서 신고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부분이 합쳐지게 되어 부부의 기부금 합계에 대한 한도규정이 적용

□ 50% 제한규정

다음의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 소득의 50%를 넘지 못함

- Public Charity Organizations
- Private Operating Foundation
- 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중 Conduit Foundation⁴⁾
- 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중 Common Fund Foundation⁵⁾

□ 30% 일반제한규정

- 50%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Qualified Organization들에게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은 개인 총 소득의 30%를 넘지 못함
- 자선단체 사용을 위한(For the use of any organization) 기부⁶⁾의 경우도 30% 제한규정이 적용

4) IRC §§170(b)(1)(A)(vii) and 170(b)(1)(E)(ii) 참조

5) IRC §§170(b)(1)(A)(vii) and 170(b)(1)(E)(iii) 참조

6) 신탁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

□ 30% 특별제한규정

- 자본이득자산을 50% 제한규정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30% 한도규정 적용
- 기부자가 자산을 판매했다면 장기자본이익이 될 시장공정가액만큼을 감소시키기로 선택한다면, 30%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50% 제한규정만 적용
- 30% 제한규정은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s)⁷⁾의 경우는 미적용

□ 20% 제한규정

- 50% 제한 단체 외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가 자본이득자산이면 20% 제한규정이 적용

- 법인(Corporation)이 기부주체인 경우, 소득공제한도는 법인 과세소득의 10%임. 법인의 경우는 개인 기부자의 경우와는 달리, 기부대상이나 기부자산에 따른 한도 규정이 없음

1) 이월공제

-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5년 동안 소득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
- 이월공제금액은 그 해 총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의 경우, 15년 동안 이월공제 가능
 - 이월공제는 당해 해당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이후에 적용

7) 후술되는 ‘사.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 참조

2) 자격요건을 갖춘 보전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

- 자격요건을 갖춘 보전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란 자격요건을 갖춘 부동산 권리(Qualified Real Property Interest)를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게 보전의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

- 자격요건을 갖춘 보전 목적의 단체(Qualified Conservation Organization)
 - 정부 관련 기관
 - 대중에게 지원을 받는 자선, 종교, 과학,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위의 정부 관련 기관이나 대중에게 지원을 받는 단체에게 지배되고, 위의 단체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운영되는 조직

- 자격요건을 갖춘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Qualified Real Property Interest)
 - 부동산에 대하여 광물에 대한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
 - Remainder Interest
 -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사용제한에 대한 권리

- 보전의 목적: 기부의 목적이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함
 - 레크레이션이나 교육, 그 밖의 공공목적에 위한 보전
 - 물고기나 야생동물, 식물, 그 외의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 보호
 - 공공의 중요이익을 내는 농경지나 산림을 포함한 환경 보전. 이 경우 공공의 자연경관을 위한 것이거나, 정부보전 정책을 위한 것
 -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나 증명된 역사적 건축물인 경우

- 역사보전 구역에 등록된 건물
 - 역사보전 구역에 등록된 건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이득권(저당권이나 빌딩 외부에 대한 제한권인 경우)을 기부한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소득공제 가능

- 제한권의 경우 빌딩의 외부를 보전해야 하고, 역사보전의 성격과 불일치하는 외부 변화를 금지하는 내용 포함
- 기부자와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서면으로 다음을 증명하는 합의서 작성
 - 단체는 환경보호, 토지보전, 역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일 것
 - 단체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Resources)과 위원회가 있을 것
- 2006년 이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는 신고시 다음 사항들을 첨부할 것
 - 감정서, 건물 외부사진, 건물개발과 관련된 모든 제한과 규제사항들에 대한 설명서

- 자격요건을 갖춘 보전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에 대한 50% 특별제한 규정
 - QCC에 대한 기부자의 소득공제는 총수입의 50%에서 다른 기부금액 전부를 합친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제한
 - 농업이나 낙농업자들의 QCC의 100% 제한규정: 기부자가 농업이나 낙농업을 하고 있는 경우, QCC의 소득공제는 총수입에서 다른 기부금액 총액을 뺀 금액의 100% 소득공제를 인정
 - 농업이나 낙농업 종사자의 자격요건: 기부자의 농업이나 낙농업을 통한 총수입이 당년도 기부자 총 수입의 50% 이상인 경우

3) 소득공제 제한규정의 적용 순서

- 기부자가 한 가지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한도에 따라 소득공제규정 적용
 - ① 기부금이 50% 제한규정에만 해당되는 경우: 기부자의 총 수입의 50% 한도까지
 - ②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의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이 제한 한도임
 - 총 수입의 30% 혹은
 - 총 수입의 50% - 5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기부한 기부금(30% 특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자산 포함)

- ③ 특별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자산(Captital Gain Property)을 기부한 경우: 다음중 적은 금액이 제한한도임
 - 총 수입의 30% 혹은
 - 총 수입의 50% - 5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기부한 기부금
- ④ 2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의 경우: 다음 중 적은 금액이 제한 한도임
 - 총 수입의 20%,
 - 총 수입의 30% -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액,
 - 총 수입의 30% - 30% 특별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이득자산의 기부금액,
 - 총 수입의 50% - 50% 제한규정을 받는 기관에 대한 기부금 총액과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액
- ⑤ 자격요건을 갖춘 보전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에 대한 특별 50% 제한 규정
 - 총 수입의 50% -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기부금액이 한도임
- ⑥ 농부나 낙농업자들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목적의 기부 100% 제한규정
 - 총 소득의 100% - 그 외의 모든 기부금액

4) 소득공제 금액

- 소득공제 대상은 현금인 기부금액과 기부자산의 공정가액의 합
- 감정평가서
 - 기부자산의 경우, 500달러가 넘는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 납세자는 신고서에 증명서(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함
 - 감정평가서 수수료는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항목별 공제로 공제 가능
- 250달러가 넘는 기부금의 경우, 수혜단체로부터 기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

아야 함(IRC §170(f)(8)). 수혜단체는 증명문서에 기부에 대한 급부로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 그 가치도 명시해야 함

□ 가격인하 매매

- 납세자가 자산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기부의 목적으로 자선단체에 판매했다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서 소득공제 가능. 이 경우는 일부는 매매이고 일부는 기부로 인정됨(IRC §170(e)(2))

□ 서비스(노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한 기부

-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되지 않음

○ 예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가 별도로 지출한 비용(Out-of Pocket Expenses)은 공제가능. 예를 들어 운전중 사용한 주유비(IRC §170(i) 1마일당 14센트), 주차비 등은 별도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가능, 그러나 일반적인 자동차 수리비나 감가상각비는 인정되지 않음.

□ 기부자에게 혜택이 있는 경우

- 기부자에게 혜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판례

납세자인 회사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학교 짓는 데 기부했지만, 새로 짓는 학교에서 만드는 도로가 그 회사가 소유하는 나머지 토지를 훨씬 비싸게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 납세자인 회사가 공공에게 주는 이득보다 개인적인 이득이 더 많으므로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 납세자가 대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그 기부금이 납세자에게 해당 대학교의 운동경기 시즌 티켓을 구입하는 권리를 준다면, 기부금의 80%를 소득공제 가능. 이 경우에도, 실제 티켓비용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IRC §170(l))

- 납세자가 기부재단으로부터 자산이나 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인정(a quid pro quo contribution)

- 이 경우, ‘a quid pro quo contribution’이 75달러가 넘으면 수혜단체는 기부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기부금액이라는 사실을 설명서를 통하여 알려야 함(판매 유치시나 기부금을 받을 때에)
- 이러한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 ‘a quid pro quo contribution’ 제공시마다 자선단체는 1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모금 행사나 메일 송부는 5,000달러로 제한됨(IRC §§6115, 6714)

5) 기부금 공제시기

-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결정되는 시기에 있어서, 미국연방세법은 기본적으로 소유권(Title)이 이전되는 시기가 기준임. 소유권이 기부받은 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 공제시점임
- 현금 기부의 경우
 - 현금이 기부받은 단체에게 전달되는 시점이 공제시점
 - 현금은 기본적으로 점유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됨
 - 현금을 기부하겠다는 의도를 알리는 것, 예를 들어 장부에 기입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공제는 실제로 지불이 되었을 때에 발생
- 수표의 경우
 -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표를 통한 기부의 경우에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가 공제시점의 기준임. 즉, 수표가 기부받는 단체에 전달되는 시점이 공제시점
- 신용카드의 경우
 - 기부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의무발생시점이 공제시점임. 즉 기부자가 카드로 기부금액을 결제하는 시점이 공제시점임(실제로 기부자가 카드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는 시점이 아님).

□ 전화 기부의 경우

- 전화를 통하여 기부하는 경우도 소득공제가 인정됨
- 주로 폰뱅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금융기관이 자선단체에 지불하는 시점이 소득공제시기임. 금융기관을 기부자의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임

□ 유가증권의 경우

- 주식이나, 채권, 그 밖의 증권들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시점은 배서(背書)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효한 증권이 기부받는 단체에 전달된 시기. 만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라면, 우편물을 부친 날짜가 공제시점임

6) 기부금액 산정

- 가치가 상승한 장기보유자산인 경우는 기부금액 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기부시점의 시장가치가 기준이 되지만,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형의 동산에 대하여서는 자산의 원가로 산정
- 가치가 하락한 자산 혹은 가치가 상승한 자산 중에서 단기보유자산(가치가 상승한 장기보유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의 경우는 기부시점의 시장가치와 자산의 원가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액으로 산정

나. 조세지원 대상 단체

- IRC(Internal Revenue Code) §170(c)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인정
 - 미국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미국 정부(연방정부, 주정부, 정부소유지, District of Columbia)의 법령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경우
 - 종교, 자선, 교육, 과학, 문학, 아동이나 동물학대 방지, 아마추어 스포츠를

육성하는 특정 단체

- 참전용사 단체
 - domestic fraternal societies, orders, and associations operating under the lodge system
 - 비영리 장묘단체
 - 미국정부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하단체
-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의 자선단체들에게 기부한 기부금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인정

1)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s)의 기본개념

- 기부금이란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에 gift(기부)하는 돈을 의미하며, 자선단체가 IRC §170(c)에서 규정하는 단체들에 속하여야 기부금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IRC §170(c)의 자선단체의 범위는 많은 부분이 연방소득세법상 면세가 인정되는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들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음. 연방세법에서는 Tax Exempt Organization이 나오는 부분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들을 따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연방소득세법상 면세받는 자선단체들은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는 Public Safety Test⁸⁾가 있음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되지만, 연방소득세법상 면세 자선단체에 속하지 않는 단체들도 존재
 -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정치적 기관들- 이 경우는 기부금이 공공의 목적으로

8) 공공안전에 대한 테스트 업무를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연방소득세법상 tax-exempt을 인정받음(IRC§501(c)(3)). 그러나 이러한 Public safety testing organization에 기부한 기부금은 deduction이 인정되지 않음(IRC§170)

- 만 기부되어진 경우임(IRC §170(c)(1))
- 참전용사들의 단체들(IRC §170(c)(3))
- domestic fraternal society, order 혹은 association(IRC §170(c)(4))
- 장묘단체들(IRC §170(c)(5))
- 연방세법에서는 네 부분에 기부금 관련 규정들이 존재
 - 자선단체에 대한 연방소득세법상의 면세(IRC §501(c)(3))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 여기에서는 Charitable donee들에 대한 자격 사항들을 규정하고, 면세단체 중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단체들을 규정함(IRC §170(c))
 -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부분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단체들을 분류해 놓음(IRC §2522(a))
 - 기부금에 대한 유산세(Estate tax)에 대한 소득공제부분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단체들을 분류해 놓음(IRC §2055(a))

2) Public Charities와 Private Charitable Organization

- Charitable Organization은 기본적으로 Private Foundation으로 추정
 - Private Foundation으로 보는 추정은 해당단체가 Public Charities이거나 다른 예외단체임을 입증함으로써 부정됨
 - Private Foundation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체들은 Public Charitable Organization이나 그 밖의 단체들로 인정받아 Private Foundation의 연방세법상의 의무를 경감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가) Public Charitable Organization

- Public Charitable Organization은 기부금 혜택을 인정받는 자선단체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단체. 소득공제 제한한도가 50%이며, Public Charitable의 범위는 IRC §170(b)(1)(A)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 교회나 교회단체

- 교육기관
- 의료기관이나 의료교육기관이거나 의료연구기관인 경우
- 정부지원을 받고, 대학교를 위하여 자산관리하는 기관
- 미국정부 관련 기관
- 정부 관련 기관이나 일반 공공으로부터 지원받는 조직
- Public Organization들을 지원하는 조직(Supporting Organization)

나) Private Foundation

□ Private Foundation은 공중 다수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닌, 한명 혹은 몇 명의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는 자선단체를 의미. 보통 한명의 개인 기부자나 가족들, 혹은 회사 자산의 투자 수입을 통하여 재원을 지원받음

□ Private Operating Foundation

Private Foundation 중 대부분의 수입과 자산을 직접 자선활동에 사용하는 단체들을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라 함. 이 단체들은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50%까지 인정됨.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 성립되기 위한 충족조건들은 성문으로 규정되어 있음.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은 미국 재무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Income Test⁹⁾를 충족하여야 하며, 여기에 추가로 Asset Test¹⁰⁾, Expenditures Test¹¹⁾, Support Test¹²⁾의 세 가지 테스트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함

9) Treas. Reg. §53.4942(b)-1(b)(2)

10) IRC §4942(j)(3)(B)(i)

11) IRC §4942(j)(3)(B)(iii)

12) IRC §4942(j)(3)(B)(iii)

3. 영국

가. 기부금 관련 세제

1) 개인

가) Gift Aid

□ Gift Aid는 UK 자선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로써 199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당시는 최소금액에 대한 제도가 있었음

□ 조세감면 사항

-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Basic Rate)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
- 기부받은 자선단체들은 국세청에 Gift Aid Payment를 청구함으로써 실제 받는 기부금액은 증가됨
- 기본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여기에서 기부금 관련 문제가 끝나지만, Higher Rate의 납세자는 소득공제시에 Higher Rate 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Higher Rate납세자가 기부한 Gift Aid에 대하여 자선단체는 기본세율 기준으로만 청구(Reclaim) 가능

〈사례〉

(단위: 파운드)

기본세율의 납세자의 경우: - 기부금 - 자선단체의 기본세율(22%)의 청구 ($22/78 \times 1000$) - 총 자선단체에 전달된 기부금액	1,000.00 282.00 1,282.00
Higher Rate의 납세자의 경우: - 자선단체의 기본세율(22%)의 청구 - 총 자선단체에 전달된 금액에 대한 기부자의 Higher Rate의 Tax Relief 청구(Higer Rate인 40%와 22%의 차이인 18%) - 기부자의 비용	282.00 230.76 769.24

□ 조세혜택의 제한

- 기부자의 Gift Aid를 통한 조세혜택 금액에 대한 제한규정
 - 1,000파운드 이상을 한 해에 기부한 기부자의 경우, 그해에 특정 자선단체가 받은 기부금액이 250파운드가 넘지 않으면, 기부금액의 2.5%까지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자선단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기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

- Gift Aid가 유효한 조세혜택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
 - 기부자나 기부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기부의 결과로 혜택을 받는지의 여부
 - 혜택을 받았다면, 그 혜택이 규정된 한도를 넘는지의 여부
- 기부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 기부자의 배우자이거나, 친척, 배우자의 친척인 경우
- 혜택(Benefit)
 - 물품이나 서비스를 자선단체나 제 3자로부터 기부자나 기부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기부의 대가로 받은 경우
- 혜택(Benefit)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부자가 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공지, 자선단체의 재산이나 야생서식지 등을 구경하는 입장권, 자선단체들의 재산을 구경하는 권리 등
- 기부자 혜택의 한도 규정
 - 기부자가 기부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다음의 제한 한도를 넘는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함

기부금액	혜택의 가치
0 ~ 100파운드	기부금액의 25%
101 ~ 1,000파운드	25파운드
1,001파운드 이상	기부금액의 2.5%

- 기부자가 받은 혜택의 가치와 해당 기부 전에 동일 기부자가 동일 자선단체에

한 다른 기부금액의 대가로 받은 혜택(동일 연도이어야 함)을 합한 가치가 250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함

□ 신고서(Declaration)

- 법률적 서식이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지만, 기부금이 Gift Aid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자선단체에게 신고서를 만들어야 함
- 신고서의 형식은 문서뿐만이 아니라, 전화, 인터넷 등으로 참가 가능
- 기부자는 연속적 기부를 한번의 신고서로써 가능(소급적, 혹은 그 이후부터 효력 발생 모두 가능)
- 기부금의 최대금액이나 최소금액의 제한은 없지만(2000년에 250파운드의 최소 기부금액 제한 규정 삭제), 자선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부금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Reclaiming tax 절차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 Gift Aid의 신고서 내용
 -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자선단체의 이름, 기부내용, 기부내용이 Gift Aid로 인정된다는 확정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Gift Aid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

- UK resident인 개인이 기부한 경우
- Crown Servants인 개인 혹은 UK 군대 멤버인 개인이 기부한 경우
- 그 밖의 non-resident인 개인에게 UK에서 부과하는 소득과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 최소한 기부금 총액 이상인 경우

□ 기부 방법

-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현금, 수표, 직불카드, 신용카드, postal order, standing order 등이 가능. 'telegraphic transfer'로도 기부 가능. 외환도 가능하며, 자선단체가 Gift Aid Payment를 청구하는 경우 외환이 기부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 청구
- 기부는 실제금액을 지불하여야 함. 채권포기나 보증에 대한 권리 등을 포기하는

것으로는 기부가 될 수 없음

- 서비스나 권리, 기타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불은 기부가 될 수 없고, 기부 세제혜택도 인정되지 않음. 다음의 경우들은 Gift Aid 범주에 속하지 않음
 - 특정인에 대한 학비 지불
 - 책이나 음식 등의 구입에 대한 비용, 바자회 등에서 구입 비용
 - 행사 등에 대한 입장료
 - 복권이나 복권식 판매(Raffle)에 대한 구입비용. Raffle 티켓 구입비용은 기부가 아니지만, Raffle 행사에 입장권은 기부로 인정. 상을 탈 가능성이 적고, 기대가 낮다는 것은 기부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상의 가치가 낮다는 것 등도 기부 여부와 무관

나) Payroll Giving

- Payroll Giving이란 근로소득자나 연금소득자들의 경우,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기부금으로 차감하는 제도
- 기부방법
 - 고용주가 Payroll Giving Scheme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 형태로 조세감면을 받음. 조세감면은 기부자의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함
 -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기부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 고용주는 이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국세청이 승인한 Payroll Giving Agency에 보내고 Agency는 모아진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전달
 - Gift Aid의 경우와는 달리,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repayment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음
- 금액의 제한 규정
 - 최소금액에 대한 규정은 처음부터 없었고, 최대금액에 대한 규정은 2000년 개정 조항에서 삭제됨

□ 정부지원제도

- 2000년부터 3년 동안, 정부는 Payroll Giving 기부금의 10%를 추가로 자선단체에 지원하기로 함. 또한 Payroll Giving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음

〈사례〉

(단위: 파운드)

매달 공제금액	자선단체에 전달되는 금액(정부지원금액인 10% 포함)	기본세율 납세자의 비용(소득세 22% 경감)	Higher Rate 납세자의 비용(소득세 40% 경감)
10.00	11.00	7.80	6.00
100.00	110.00	78.00	60.00

□ Agency Charities

- Agency Charities는 ‘Charitable Deductions Regulations 1986’ 시행규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의하여 승인된 기관임. 영국 국세청의 산하기관인 IR Chairites에서는 Agency Charities 신청에 대한 승인과 관련된 업무 담당
- Agency Charities와 고용주는 시행규칙에서 요건으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Agency의 역할은 기부금을 기부자들이 명시한 기부단체들에게 분배하는 것임
- 모든 조세경감은 소득원에서 기부자에게 주어지므로, Agency Charity나 기부를 받는 자선단체들에게는 세금이 반환되지 않음

다) 부동산, 지분, 증권의 기부(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 2000년부터 지분이나 증권, 그 밖의 투자자산 등을 기부하는 경우 세금감면을 인정. 2002년부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세금감면이 인정됨

□ 조세혜택의 내용

-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혜택(Benefit)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대상

○ 조세감면은 기부자의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함

〈사례〉 기부자가 5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하였음. 기부 당시 가치는 각 주당 10파운드. 기부자는 브로커 수수료로 50파운드를 지출. 감사의 표시로 자선단체는 기부자에게 50파운드 가치의 책을 증정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주식 가치	50,000
+ 브로커 수수료	<u>50</u>
	50,050
- 받은 혜택	<u>50</u>
	50,000

〈사례〉 주식을 팔고 Gift Aid의 절차를 통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의 가치와 기부자의 비용을 고려함
Higher Rate인 납세자가 100,000파운드 가치인 주식을 판 경우,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순이익이 25,000파운드이며, 여기에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

- 방법 1: 판매 후 Gift Aid

1. 판매	
판매 총수입	100,000
-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25,000×40%)	10,000
세금 후의 순이익	90,000
2. Gift Aid	
기부	90,000
자선단체의 기본세율 reclaims(22%) (22/78×90,000)	25,384
총 자선단체가 가져간 금액	115,384
총 자선단체가 가져간 금액에 대한 기부자의 Higher Rate Tax Relief 18% (기본세율22%와 Higher Rate40%의 차)	20,769
기부자의 비용	
주식의 가치	100,000
- Tax Relief	20,769
	79,231

– 방법 2: 자선단체에 주식기부

자선단체가 얻은 주식의 가치	100,000
가치에 대한 기부자의 Tax Relief (at Higher Rate Tax 40%)	40,000
기부자의 비용	60,000

2) 법인

가) Gift Aid

- 법인에 의한 Gift Aid의 경우는 신고서(Declaration)가 요구되지 않음
- 조세감면 사항
 - 법인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모두 조세혜택으로 받을 수 있음
 -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Charge on Income’으로 분류되어 과세수익 (Taxable Profit)에서 제외
 - 기부금 자체는 세금부과 없이 자선단체에게 전달되고, 개인 Gift Aid의 경우와는 달리 자선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나) 부동산과 지분, 증권의 증여(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 2000년부터 법인이 지분이나 증권, 그 밖의 투자자산 등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감면 인정. 2002년부터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이 인정
-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혜택을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대상

〈표 Ⅲ-3〉 영국의 기부금 세제 개요

기부주체	기부받는 단체	기부방법	조세감면 사항	비고
개인	1. CC(Charities Commission, England와 Wales의 경우)와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에 등록된 Charities	Gift Aid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	2000년 기부금액 한도규정 삭제
		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대상	2000년과 2002년 신설 제도
		Payroll Giving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접 tax relief가 이루어짐	2000년 기부금액 제한규정 삭제
법인	2. ‘Charities’의 성립요건들은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로 발전	Gift Aid	‘Charge on Income’으로 분류되어 회사의 과세수익에서 제외	2000년 기부금액 한도규정 삭제
		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대상	2000년과 2002년 신설제도

나. 조세지원 대상 단체(Charities)

1) 자선단체(Charities)

- ‘자선단체’의 정의: ‘자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나 신탁’
 - 자선의 목적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판례를 통하여 정리
 - The British Museum, the Natural History Museum, the 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 Commission and the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들은 일반적으로 Charity가 받는 조세혜택을 인정하므로,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의 경우도 자선단체와 동일하게 적용

- CC(Charity Commission)와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

- 자선단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CC(Charity Commision, England와 Wales의 경우)와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을 두고 있음
- CC와 OSCR에서는 자선단체로부터 등록신청서를 받아 자선단체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등록함. 여기에 등록된 자선단체들에게만 기부한 기부금의 세제상 혜택이 인정됨
- 그 밖에 CC와 OSCR에서는 자선단체들을 관리, 규제하며 자선활동을 지원
 - 자선단체들은 CC와 OSCR에게 매년 필수사항(활동내역, 재정사항 등)들을 보고하여야 함

2)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Community Amateur Sports Clubs)

-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 커뮤니티로 등록된 스포츠 클럽은 2002년부터 다양한 세금 경감조치와 자선단체와 유사한 조세혜택이 인정
- 개인의 Gift Aid의 경우, 자선단체로 취급되어 동일한 조세혜택이 인정. 즉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은 기부한 금액에 대한 기본세율 세금 반환을 국세청에 청구 가능

4. 일 본

가. 기부금 관련 세제

- 일본은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기부금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기부금의 종류 또는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조세지원제도에 차이가 있음
- 개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동일함
 - 기부금 공제액은 다음 ①, ②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5천엔(2005년 이전분은

1만엔)을 차감한 금액임

① 당해 연도에 지출한 특정기부금의 합계액

② 당해 연도 총 소득금액의 30% 상당액

- 특정기부금이란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의 기부금, ② 지정기부금(재무대신의 지정에 의함), ③ 특정공익증진법인에의 기부금, ④ 정치단체 등에의 기부금을 말함

- 총 소득금액이란 결손금, 잡손실, 기타 각종 손실의 이월공제 후의 총 소득금액, 특별공제 전의 분리과세의 장·단기 양도소득의 금액,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 금액, 선물거래에 관한 잡소득 금액, 산림소득금액 및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를 말함

○ 일반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법인의 경우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달리 정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 특정공익증진법인과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과 별도로 일정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동일한 손금산입한도

○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금액은(소득금액 × 2.5% + 자본금액 × 0.25%)의 50%임

〈표 Ⅲ-4〉 일본의 기부금세제 개요

	기부금 유형	공제 한도
개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기부금액 (소득금액의 30% 한도) - 5천엔)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공제 없음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소득금액 × 2.5% + 자본금액 × 0.25%
	일반기부금	(소득금액 × 2.5% + 자본금액 × 0.25%) × 50%

나. 조세지원 대상 단체

- 일본의 경우 기부받은 단체에 따라 기부금을 구분하고 각각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부금을 받는 단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 인정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
 - 일반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일반기부금)

1) 지정기부금 대상

-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 중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재무대신이 지정된 것(법37④二, 영75)
 - 널리 일반에게 모집되는 것
 -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충당하는 것이 확실한 것

2) 특정공익증진법인

- 특정공익증진법인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법인을 말함(영 77)
 -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
 - 지방독립행정법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으로 다음의 업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
 - 시험연구, 병원사업의 경영, 사회복지사업의 경영
 -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자동차안전운전센터, 총합연구개발기구,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일

본적십자사

-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재)일본체육협회, (재)무역연수센터, (재)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방송프로그램센터, (재)장수사회개발센터, (재)일본올림픽위원회,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 (재) 대판만지역 개발추진기구, 정신장애자사회복지촉진센터, 학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본육영회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의 지정을 받은 것
- 민법 법인으로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 인문과학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에 한함
-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하는 학교법인으로 학교의 설치 또는 학교 및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제4항에 의해 설립된 준학교법인에서 전수학교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 갱생보호사업법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갱생보호법인

3) 인정NPO법인

- NPO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각 국세청장의 인정을 받은 NPO법인을 「인정 NPO법인」이라 부르며, 이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 조치를 하고 있음
- 처음에 NPO법은 간단한 법인격의 취득과 지원세제를 주로 하여 법 정비가 추진되어 왔으나 지원세제의 논의를 보류하고 1998년에 NPO법이 성립되었음
 - 법이 제정될 당시에 「NPO법의 시행 후 2년 이내에 세제를 포함한 NPO제도의 개선」을 행한다고 하는 부속결의가 이루어졌음
 - 2001년에 시작한 인정NPO법인제도는 1998년의 NPO법의 부속결의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조세특별조치법의 개정이라는 형식을 거쳐 실시되었음

- 또한 2002년의 NPO법 개정에 따라 NPO법에 인정NPO법인 제도가 규정되어, NPO법은 일단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인정NPO법인은 매우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현재 그 단체 수는 상당히 적음

가) 인정NPO법인의 성립 요건

(1) public support 테스트

- public support 테스트란 NPO법인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는지 수입 면에서 판단하는 기준임
 - 인정NPO법인의 요건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public support 테스트의 요건에 있어 실적판정기간에 대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임
 - 실적판정기간이란, 신청사업연도의 직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종료일 전 2년 이내에 종료한 사업연도 중 가장 오래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전 2사업연도를 합한 기간을 말함
 - 판단기준: 수입기부금총액 등 ÷ 총 수입금액 등 $\geq 1/5$
 - 단, 실적판정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기비율 $\geq 1/10$ 을 만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기 기준은 원래 $1/3$ 이지만 특례에 의해 $1/5$ 로 기준이 완화되었음
- 수입기부금총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음
 - 기부자의 이름이 불명확한 기부금, 1인당 연간 1,000엔 미만의 기부금, 1인당 기준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
 - 1인당 기준한도액 = 수입기부금 총액 $\times 5\%$
- 총 수입금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지방공공단체, 일본이 가입한 국제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수입
 - 국가, 지방공공단체, 일본이 가입한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위탁사업수입

-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부담수입
-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임시적인 수입
- 상속·유증에 의한 기부 중 1인당 기준년도초과액
- 1인당 연간 1,000엔 미만의 기부금
- 기부자 이름이 불명확한 기부금

- 소규모법인(실적판정기간 내의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800만엔 미만인 법인)이 실적판정기간에 임원 및 사원을 제외한 50인 이상의 기부자로부터, 1인당 3,000엔 이상의 기부금으로 기부자가 명확한 것을 받는 경우에는 2006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신청에 대해 public support 테스트 대신에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판정할 수 있음
 - $\{(수입기부금 총액 - 1인당 기준년도초과액) + \text{국가 등의 보조금} + \text{사원의 회비}\} / (\text{총수입금액} - \text{국가 등의 위탁사업수입등}) \geq 1/3$
 - 또한 이 계산식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기준(1/10 이상)은 적용하지 않음

(2) 공익적인 활동에 관한 요건

- 단체 구성원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계된 요건으로, 다음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활동을 합계한 것이 전체의 사업활동의 50% 미만이어야 함
 - 회원 등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활동(대가를 받지 않는 활동 제외) 및 회원 등 상호 교류, 연락, 의견교환 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특정 범위의 자에게 편익이 미치는 활동이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특정의 저작물 또는 특정인과 관련된 활동이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특정인의 뜻에 반하는 활동이 사업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회원 등이란 다음을 포함함

- 법인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이나 대부를 받는 자로서 그 법인의 장부서류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자, 동시에 그 법인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이나 대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자
- 상호교류, 연락, 의견교환에 참가하는 자로서, 그 법인의 장부서류 등에 이름이 기재된 자, 동시에 실제로 상호교류, 연락, 의견교환에 참가한 자
- 임원

□ 대가를 받지 않는 행위활동 등은 다음을 포함함

- 이용자가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활동
- 이용자가 통상의 대가보다도 극히 적은 대가(약 10% 정도)를 지불하는 활동
- 법인이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필요한 비용 중 이용자가 본래 부담할 교통비나 소모품비 등의 어느 것이든 실비상당액만을 이용자가 지불하는 활동
- 법인의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라 그 비용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최저임금 이하(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라)의 금액과 그에 부수하는 실비상당액만을 이용자가 지불하는 활동

□ 특정 범위의 자에게 편익이 미치는 활동이란 특정 단체의 구성원, 특정 직위의 자, 특정 지역의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함

□ 특정 저작물 또는 특정인에 관련된 활동이란 특정의 저작물이나 특정인에 관련하여 보급계발, 광고선전,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말함

(3) 운영조직·경리의 적정성 요건

- 인정 NPO법인은 운영조직 및 경리에 대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운영조직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frac{\text{임원 또는 사원 중 친족 등으로 구성하는 가장 큰 그룹의 사람 수}}{\text{임원 또는 사원의 총 수}} \leq 1/3$$

임원 또는 사원 중 「특정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으로 구성하는

$$\frac{\text{가장 큰 그룹의 사람 수}}{\text{임원 또는 사원의 총 수}} \leq 1/3$$

- 회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것 혹은 청색신고법인과 동일한 거래기록, 장부를 보존할 것
- 부적정한 경리를 하지 않을 것

(4) 사업활동의 적정성 요건

- 인정NPO법인은 상시 사업 활동에 있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특정의 공직자 또는 정당을 추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행하지 않을 것
 - 임원, 사원종업원 또는 기부자 등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지 않을 것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 등에게 기부하지 않을 것
 - 이러한 요건은 인정NPO법인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임
 - $\frac{\text{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비}}{\text{총사업비}} \geq 80\%$ (실적판정기간에 판정함)
 - 이 비율을 사업비 이외의 지표에 따라 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그 사업비 이외의 지표에 의해 산정한 비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에 따라 산정한 비율 대신, 사업비 이외의 지표에 의해 산정한 비율에 의해 그 요건의 판정을 행할 수 있음
 - $\frac{\text{수입기부금총액 중 특정 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비에 충당한 금액}}{\text{수입기부금 총액}} \geq 70\%$ (실적판정기간에 판정함)
 - 이 요건은 기부금의 70% 이상을 NPO법인의 본래 목적인 특정비영리활동에 관계된 사업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임

- 기부금을 모집하여, NPO법인의 급여나 관리비에만 충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임
- 200만엔 초과 해외송금 등을 행하는 경우는 사전에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화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후제출)

(5) 정보공개에의 적정성 요건

- 인정NPO법인은 항상 다음의 서류를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보고서 등, 임원명부 및 정관 등
 - NPO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에 일괄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임원명부, 직원 중 10명 이상의 자를 기재한 명부
 - 임원보수 또는 종업원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
 - 사업활동의 적정성 요건 중 조성금의 지급 및 해외송금 또는 해외송금시 국세청 장관에 제출한 서류
 - 자금에 관한 정보: 수입금액의 원천별 명세, 차입금 명세 등
 - 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정보: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행하는 경우 그 내용, 요금조건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함
 - 거래에 관한 정보
 - 수입·지출에 대한 거래 금액의 상위 5위까지의 거래처 이름, 명칭, 주소, 거래금액, 거래내용 등 사업활동의 적정성 요건에서 임원 등과의 거래에 관한 거래처 이름·명칭, 관계, 주소, 거래금액, 거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
 - 회원제도에 관한 정보
 - 회원의 자격요건, 회비제도, 회원의 주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의 시정촌별 수 등을 기재한 서류
 - 기부에 관한 정보
 - 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 수입기부금의 사용, 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20만엔 이상의 기부자에 관한 사항

- 20만엔 이상 기부를 한 자의 이름, 명칭, 기부금액, 수령 연월일을 기재한 서류
- 임원보수와 종업원의 급여에 관한 정보
- 지출기부금의 정보
 - 지출한 기부금액, 지출처의 이름, 명칭, 주소, 지출 연월일을 기재한 서류
- 200만엔 이하의 해외 송금 금액 등
-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인 구체적인 사업내용

(6) 부정행위 등 금지요건

- 인정NPO법인은 항상 법령위반, 부정행위, 공익에 반하는 사실 등이 없어야 함

(7) 설립 후의 경과연수 요건

- 인정NPO법인의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제출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 개시일에 있어서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함

(8) 관할청의 증명요건

- 인정NPO법인의 인정시에는 관할청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함

나) 인정NPO법인 선택의 장단점

- 인정NPO법인 선택의 장점
 - 기부자에게 세제상 우대조치가 있기 때문에 기부를 모집하기가 일반 NPO법인보다 쉬움
 - 인정NPO법인은 간주기부금제도가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 법인세 등이 경감됨
 - 간주기부금제이란 세법상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부터 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동일법인의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의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므로 외부로 지출한 기부금과 합산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을 말함

- 현실적으로 인정NPO법인의 인정요건은 상당히 엄격하고 많은 일반NPO법인에 있어서 그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로 신뢰도가 상승될 수 있음

□ 인정NPO법인 선택의 단점

- 인정NPO법인은 일반NPO법인에 비해 운영상의 관리비용·사무비용이 증대함
- 인정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정의 연장이나 갱신이라는 절차가 없고 인정을 계속적으로 신청해야 함
- 운영상의 관리비용·사무비용의 발생·증대뿐만 아니라 20만엔 이상의 기부자(임원 및 사원 또는 그 친족 등에 한해)의 이름 또는 명칭, 임원·종업원(사원 및 임원 또는 사원의 친족에 한함) 개인의 보수액이 열람대상이 됨
- public support 테스트 요건을 계속 만족하려면 특정의 단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됨

5. 프랑스

- 프랑스는 2003년 8월 1일 세법 개정으로 과거에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던 방식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음
- 개인이 공익단체(public utility organizations, associations of general interest), 종교단체(religious organizations)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66%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과세소득의 20%를 한도로 함
- 특정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470유로까지는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20%까지 6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한 후 차기 5년간 이월하여 개인의 세액에서 공제함

- 법인(legal entities)은 공익협회(public utility associations, general interest associations), 공익재단(public utility foundation) 등에 기부한 경우,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매출의 0.5%를 한도로 함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한 후 5년간 차기로 이월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음

- 계약에 의한 기부(Contractual Donation)에 대한 과세
 - 프랑스에서는 ‘단순한 기부(simple donations)’와 ‘계약에 의한 기부(contractual donation)’를 구분하고 있음
 - 계약에 의한 기부는 일반적으로 보조금(grant)이나 기부금 수취로 인해 특정 의무가 부과되는 조건부 기부(conditional gift) 같은 기부를 말함
 - 유언에 의한 기부도 계약에 의한 기부에 포함됨
 - 대부분의 비정부기구(NGOs)는 공익단체(public utility organization)가 지급하는 계약에 의한 기부와 단순한 기부를 모두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다음 단체들은 행정관청의 승인에 따라 공익단체 이외의 단체로부터 계약에 의한 기부를 받을 수 있음
 - 공익단체(public utility organization)
 - 종교단체(religious organization)
 - accredited federations of family association
 - associations carrying out exclusively medical or scientific research or charitable assistance
 - associations financing electoral campaigns
 - associations financing political parties

- 계약에 의한 기부는 다음 단체에 지급된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registration fee가 부과됨
 - 수입이 과학·문화·예술, 환경 및 자선, 동물보호에 지출되는 공익단체
 - 수입이 과학 및 의학 연구에 지출되는 협회(association)
 - 고등교육과 대중교육의 수행하는 주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공익단체

- 종교단체
- 전쟁기념물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

〈표 III-5〉 프랑스의 기부금세제 개요

	기부 유형	공제한도
개인	공익단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
	특정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470유로까지: 기부액의 75% 세액공제 470유로 초과금액: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
법인	공익단체,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매출의 0.5% 한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

자료: U.S. International Granting, 2006.

- 고용인 20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기부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인 이상 고용기업인 6,000여개의 기업 중 18%에 해당하는 기업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남¹³⁾
- 2005년 기업기부금 지출액 규모는 10억유로이며, 기부법인의 53%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음
- 기부법인의 52%가 문화분야에 기부하였고 31%가 기술지원에 대한 기부였음

6. 독 일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는 기부를 받는 단체에 따라 5%인 경우와 10%인 경우가 있음

13) 임주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진 아르코에서 발췌

- 소득공제 한도 5%인 경우
 - 개인이나 회사가 기부한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비영리인 경우
 - 소득공제 한도에 있어서 총 수입의 5% 혹은, 매출액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0.2%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 한도 10%인 경우
 - 개인이나 회사가 기부한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과학, 자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 등을 가지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5% 대신 10%로 증가
 - 소득공제 한도에 있어서 총 수입의 10% 혹은, 매출액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0.2%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표 Ⅲ-6〉 독일의 기부금세제 개요

기부자	기부받는 단체	조세혜택 사항
개인	공익, 종교 등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 (일반 비영리단체)	• 소득금액의 5%까지 혹은 매출과 임금합계의 0.2%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공제
	과학, 자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 등을 가지는 경우	• 소득금액의 10%까지 혹은 매출과 임금합계의 0.2%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공제
법인	공익, 종교 등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 (일반 비영리단체)	• 총 소득의 5%까지 혹은 총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에서 지출된 임금 및 급여를 합한 금액의 2% 중 기업이 선택하여 소득공제
	과학, 자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 등을 가지는 경우	• 소득금액의 10%까지 혹은 총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에서 지출된 임금 및 급여를 합한 금액의 2% 중 기업이 선택하여 소득공제

- 특정 재단(공법상 재단과 특정 민간 비영리법상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과 회사 모두 20,450유로까지 소득공제가 인정
- 개인기부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 설립된 재단에 기부한 경우, 307,000유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9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 과학, 자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을 위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25,565유로를 넘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
 - 기부자가 개인의 경우 1년 차기이월, 5년 전기 이월 가능
 - 기부자가 회사인 경우 6년 차기이월 가능

- 기부금 세제개정안이 의회 표결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의 총 소득의 5~10%에서 20%로 인상,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랐던 규정을 20%로 단일화
 - 특정의 자원봉사활동(노인, 환자, 장애인을 매일 20시간 이상 무보수로 돌보는 경우, 혹은 공법상의 법인이나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에 대한 세금공제 도입
 - 부정확한 기부금 증명에 대한 책임 완화, 잘못 사용된 기부금에 대한 법규 완화
 - 법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

7. 대 만

- 개인의 경우 정부, 교육, 문화, 공공복리, 혹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항목별 소득공제 항목임
 - 정부, 국방, 군대 후원 등에 기부한 경우는 20% 한도 제한을 받지 않음
 -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육, 문화, 자선, 공공복리 단체들의 소득공제는 총 소득의 20%를 넘지 못함
 - 정당에 기부한 경우는 총 소득의 20%를 넘지 못하고, NT\$200,000를 넘지 못함
 - 정치활동을 위하여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기부한 경우는 NT\$20,000를 넘지 못함
 -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에 기부한 경우는 총 수입의 50%를 넘지 못함

- 영리기업이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다음에 따라 손금산입이 인정
 - 국방을 위한 건설, 군대 지원, 그 외의 재무부가 인정하는 목적을 위한 기부인 경우, 손금산입 한도는 무제한
 - 공공복지와 관련된 민법 규정과 그 밖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육, 문화, 공공복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손금산입한도가 최대 10%까지 인정

〈표 Ⅲ-7〉 대만의 기부금세제 개요

기부자	기부받는 단체	세제혜택 사항
개인	정부, 국방, 군대후원	소득금액의 100%
	등록된 교육, 문화, 자선, 공공복지	소득금액의 20%
	정당, 공직후보자	20만NT\$(소득금액의 20%) 2만NT\$
법인	정부, 국방건설, 군대위문, 정부와 재무부가 허가한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손금산입
	교육, 문화, 공익, 자선사업 등에 종사하는 단체	소득금액의 10% 손금산입

IV. 주요국의 기부금세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 비교

- 조세혜택이 인정되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범위
 - 국가별로 요구하는 개별적인 요건들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예술, 문화, 환경, 동물보호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기부금에 대한 국가별 세제혜택 방법
 -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나누어짐
 - 소득공제방식을 사용하는 국가: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영국, 대만
 - 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하는 국가: 프랑스
 - 소득공제방식 국가들 대부분은 전체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정하여 공제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개인기부금의 조세혜택 범위
 - 소득공제방식으로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공제 혜택이 큼

〈표 IV-1〉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소득공제인 경우		세액공제인 경우	
미국	소득금액의 50% 또는 30% 한도내	프랑스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영국	기부금액의 22% 또는 40%, 공제한도 제한은 없음		
일본	(기부금액(소득금액의 30% 한도) - 5천엔) 소득공제		
대만	소득금액의 20%		
한국	소득금액의 100%~10%		
독일	10% 또는 5% 한도내(개정안: 20%)		

주: 한국의 경우, 개인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법정기부금(100%), 특례기부금(100%, 50%), 지정기부금(10%)에 따라 다름

□ 법인기부금의 조세혜택 범위

-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의 조세혜택의 범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동소이함
 - 대개의 국가들의 경우, 소득의 5~1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한국의 경우도 5%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인정

〈표 IV-2〉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소득공제인 경우		세액공제인 경우	
미국	소득금액의 10% 한도내	프랑스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 (매출의 0.5% 한도)
영국	과세수익에서 기부금액을 차감		
일본	기부받는 단체별로 다름		
한국	손금산입한도 50%~5%		
대만	손금산입한도 10%		
독일	5% 또는 10% 한도내(개정안: 20%)		

주 : 1. 일본의 경우, 기부단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전액 손금산입, (소득금액×2.5%+자본금액×0.25%), (소득금액×2.5%+자본금액×0.25%)×50%로 나뉘어짐
 2. 한국의 경우, 법인기부금이 법정기부금(50%), 특례기부금(50%), 지정기부금(5%)으로 분류되어 공제한도가 달라짐

2.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기부와 관련된 조세제도에 대하여 자료가 허용하는 한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그 대상국에는 개인의 기부가 가장 활발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온 영국, 최근 민간 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우리와 제도상에서 유사한 일본과 경쟁국으로 인식되는 대만을 포함하고 있음
-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의 국제비교를 위하여 단순히 소득공제율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음

- 각 나라의 기부에 대한 문화가 다르고, 비영리단체의 성격 및 구성이 국가별로 차별화되며 사회복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임
 - 그러나 국가별 비교를 기부자와 기부받는 단체의 성격 및 분야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조세지원의 범위는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소득공제는 소득의 5~10%를 한도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부받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5~50%까지 소득공제가 차별화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비영리분야(예: 문화, 예술, 학술, 종교, 자선 등)에 대한 지원의 정도를 비교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하여 지원 수준이 크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법인기부에 대하여는 주주의 권익침해 또는 기부의 비순수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법인보다는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정책도 이와 방향을 같이해 왔음
-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조세지원의 범위는 국가별로 차별화되며, 미국이 가장 큰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부받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10~100%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나, 일반적인 비영리분야를 비교하면 다른 국가에 비하여 기부에 대한 우리의 조세지원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주요국의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의 내용을 분석하고 국제비교한 결과와 우리나라 기부의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기존의 소득공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부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을 관찰한 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하여 세제지원의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므로 소득공제 수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소득공제 수준의 상향 조정은 세수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면서 재조정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조세편람, 『영화조세통람』, 2007.

임주연, 「프랑스의 문화예술 조세지원제도」 웹진아르코 80호, 2007. 8.

世務經理協會, 『NPO法人の すべて』, 2003.

財經詳報社, 『圖說 日本の税制』, 2005.

中央經濟社, 『詳解 NPO法人 實務必携』, 2006.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6.

CA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aritable giving November 2006.

U.S. International Granting

Lester M. Salmon, *The International Guide to Nonprofit Law*, John Wiley & Sons, Inc., 1997.

KPMG, Flash International Executive Alert, 2006.

CCH, *Tax handbook*, 2003-04.

Tolley's, *Corporation Tax*, 2002-03

Tolly's, *Income Tax*, 2002-03

Tiley & Collision, *UK Tax Guide*, 2006-07

Foundation Press, *Tax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2003

ARC, *Federal Taxtion*, 2001

Wiley, *The Taxation Law of Charitable Giving*, 2005

Wiley, *the Law of Tax-Exempt Organizations*, 2003

Gilbert Law Summaries, *Income Tax I-Individual*. 2002

Taxation and Tariff Committee ministry of finance The Republic of China,

Guide to ROC Tax, 2006

Debra Morris, The Fiscal Treatment of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UK,
2001

Michels, JR, 2001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UK Charity
Law: Is it creating a True Democracy of Giving?

U.S. International Grantmaking, England and Wales, 2006

U.S. International Grantmaking, Germany, 2006

CAF, Analysis of giving through Gift Aid, 2006

NCVO & CAF, UK Giving 2004/05

Giving USA Foundation, Giving USA 2007

The Urban Institute, The Nonprofit Sector in Brief, 2007

<http://www.hmrc.gov.uk/charities>

<http://www.charity-commission.gov.uk>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2006

<http://www.ibfd.org>

<http://www.dot.gov.tw>

<http://www.oscr.org.uk>

<http://www.charity-commission.gov.uk>

세법연구 07-05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2007년 11월 23일 인쇄
2007년 11월 29일 발행

저 자 손원익 · 김정아 · 송은주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63-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